

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칙 제22조의2에 정한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(지침의 제·개정) 이 지침은 총장 결재로 제정하여 시행하며 개정은 교무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결재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조(대상학과) 학위과정 변경은 석박사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원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신청자격)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입을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 학과와 동일한 석사과정 학과에 재학 중인 자 (수료생 및 휴학생 불가)
2. 신청 당시 등록 학기가 2~4학기에 해당하고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자
3. 전 학년 평점평균이 3.50(F 포함)이상인 자

제4조(신청절차) 학위과정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작성한 별지 서식의 학위과정 변경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학사 시스템을 통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형) ①교무처장은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한 자의 소속 학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, 학과장은 학생의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전형은 서류평가·면접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할 수 있으며, 학과별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학위과정 변경의 승인) ①학장은 학생이 제출한 지원서, 제출서류 및 학과장이 제출한 ①학과장은 전형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교무처장은 학과의 전형 결과를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정한다.

②교무처장에 의하여 승인된 학위과정 변경은 매학년도 1학기에 승인된 건의 경우 7월 1일을, 2학기에 승인된 건의 경우 1월 1일을 기준일로 한다.

③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이 석사과정 재학중 응시한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합격한 학위청구논문 심사(예비심사를 포함)의 결과는 취소한다.

제7조(등록) ①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학칙 제2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②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이 석사과정 재학 중 등록한 학기는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제8조(학점인정)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이 석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통합과정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9조(학기당 수강학점)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1개 학기에 한하여 3학점까

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.

제10조(논문제출 자격시험 등)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의 논문제출자격시험, 학위청구논문, 학위수여에 대해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(대학원과정)에 정한 석박사 통합과정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.

제11조(준용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(대학원과정)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.

부 칙

본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개정 전에 학위과정 변경된 학생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, 재학 중 학생이 희망하는 1개 학기에 한하여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